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5. 9. .
발 의 자	양진오 의원 외 9명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2015. 9. .
발 의 자 양진오, 강승수, 권기만,
김근아, 손홍섭, 안주찬,
허복, 정하영, 안장환,
윤종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
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
보훈·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근거 마련(안 제4조)
- 참전 명예수당 월 7만원 지급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나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의 본문 중 “월 5만원”을 “월 7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<u>월 5만원</u> 지급	제4조(지원사업) 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<u>월 7만원</u> 지급

관계법령

[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
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수당지급대상자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,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3.5.29., 2006.3.3., 2007.1.3., 2008.3.28.>

② 삭제 <2005.3.31.>

③ 생략

④ 생략

⑤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19조 본 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·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07.1.3.>

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·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2.1.26.]

제19조(회원의 자격) 제2조에 따른 6·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람은 각각 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